

의안 번호	1194
----------	------

##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5. 11. 20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5. 12. 14.(월)

### 2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목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
- 나. 명칭 및 설치목적 변경
  - 명 칭 :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→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  - 설치목적 : 재난현장 총괄지휘 → 재난현장 총괄·조정 및 지원

### 4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목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  - 주요내용으로는
    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를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로 변경하며
    -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
    - 재난현장 총괄지휘를 재난현장 총괄·조정 및 지원으로 변경 하는 것임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〈 관 계 법 령 〉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>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>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6., 2014.12.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>

[전문개정 2010.6.8.]

부칙 <법률 제12943호, 2014.12.30.>

제4조(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.